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아이수루 의원 발의 】**

**【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

**【 황유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53, 59, 93

## I. 조례안 개요

### 1. 발의자 및 제안경과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

- (1) 발 의 자 : 아이수루 의원 (찬성 35명)
- (2) 발의일자 : 2022년 8월 9일
- (3) 회부일자 : 2022년 8월 12일

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

- (1) 발 의 자 : 최호정 의원외 14명
- (2) 발의일자 : 2022년 8월 12일
- (3)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

- (1) 발 의 자 : 황유정 의원 외 19명
- (2) 발의일자 : 2022년 8월 29일
- (3)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

- 현행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
- 이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하여, 차별행정 논란을 해소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가능한 내국인주민을 주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적·인종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도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함.

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

-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서울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및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가족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

- 교통비 지원대상에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임신부를 포함함

(안 제4조의4 제1항).

-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임신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4 제2항).

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

- 시장이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제4조의3 이하의 임신부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계속 거주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4제1항제1호).

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

- 시장이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4. 참고사항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

- (1)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

- (1) 관계법령 : 해당없음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

- (1)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개요

-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주민 임산부(아 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번호53)를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안과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교통비 및 산전·후 우울증 검사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시장이 출산 및 양육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적·인종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한 안(최호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59)이 각각 발의되었음.
- 또한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은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검토

#### 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의안번호 53, 59)

- 서울특별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비판적 언론보도<sup>1)</sup>가 있었음.

-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면 지원대상이나 「국적법」 제5조<sup>2)</sup> 및 제6조<sup>3)</sup>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등 귀화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출산 중 귀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에 불과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출산을 하는 임신부가 67%를 차지하고 있음.<sup>4)</sup>

---

1) 이상서, (2022.07.21.) 이주단체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급, 외국인 제외는 차별", 연합뉴스, url생략

2)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1의2. (생략)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 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 이 인정할 것

3)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4. (생략)

4) 통계청,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24

<표1. 다문화 출생 유형별 규모 및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8	비중	2019	비중	2020	비중
	다문화출생	18,079	100.0	17,939	100.0	16,421
외국인 모 <sup>5)</sup>	11,357	62.8	11,524	64.2	10,996	67.0
외국인 부	2,763	15.3	2,410	13.4	2,162	13.2
귀화자	3,959	21.9	4,005	22.3	3,263	19.9

<이주민 관련 용어의 구분>

용어	재한외국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행정자치부 2020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세부유형 기준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내용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특별시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② 외국인이었거나 국적취득자  ③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중 최소 한명은 한국국적자인 경우6))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과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5) 외국인 모(출생기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부터의 출생); 외국인 부(외국인 부와 출생기준 한국인 모로부터의 출생); 귀화자(부와 모 중 한쪽이 귀화자 또는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

6)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2015), p.1~4.

- 이에 외국인주민(아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번호 53)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임신부(최호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59)를 서울특별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각각 안이 발의되었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의안번호 53)	개정안 (의안번호 59)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u>임산부</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임산부</u></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 <u>임산부(「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임신부를 포함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1. ----- ----- ----- ----- <u>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u></p>

현행	개정안 (의안번호 53)	개정안 (의안번호 59)
<p>2. (생략) <u>&lt;신설&gt;</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p>	<p>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③ ----- 제1항 및 제2항----- ----- -----.</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 제4항----- ----- ----- -----</p>	<p><u>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의안번호 53)	개 정 안 (의안번호 59)
<p>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 ⑦ (생략)</p>	<p>----- -----.</p> <p>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 소관부서는 임신은 결혼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다문화가족 임신부의 자녀는 출생시 한국국적임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 임신부를 교통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의안번호 59 관련)
- 한편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 부부 모두 외국인) 임신부에게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외국인 상호주의 원칙<sup>7)</sup>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아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의안번호 53 관련)
- 따라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나. 임신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관련(의안번호 59)

- 현행 조례안 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은

7)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5<sup>8)</sup>를 근거로 보건소에서 임신부 등록 시 산전·후 우울증 진단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59) 제4조의3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도 산전·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임신부 지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취지임.
-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3조의3<sup>9)</sup>에서 결혼이민자<sup>10)</sup>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임신부를 지원 대상 포함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소관부서 또한 다문화가족 임신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기시행 중에 있어 동 개정안에 별도 이견 없음으로 의사를 표시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안번호 59)
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u>임산부</u> 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	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u>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u>

- 8)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9) 「모자보건법」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7.]
- 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의안번호 59)
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u> <u>이하 같다)</u> -----.

**다. 소급적용 관련 부칙규정(의안번호 53, 59)**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현행 제4조의4제1항제2호<sup>11)</sup> 및 부칙 제1조<sup>12)</sup>는 2022년 7월 1일 시행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출산한 임산부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인 경우 입법목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sup>13)</sup>.

1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1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8397호,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법제처 2020. 12. 16. 의견제시 20-0269

- 따라서 임신부 교통비 지급은 임신부에게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1제1항<sup>14)</sup> 및 현행 조례 제4조제2호<sup>15)</sup>에 따라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익적 성격의 규정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해 보임.
- 다만,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53)의 부칙은 소급적용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고,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59)은 부칙을 개정사항으로 보고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아래와 같이 부칙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해 보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소급적용한다.

## 라. 자녀 양육부담 경감 관련(의안번호 93)

-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93) 제5조는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sup>16)</sup>

- 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1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영유아 가정에 이동서비스 지원과 자녀 양육가정에 식사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함임.

-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체감도 높은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과 자녀양육에 있어 주로 보육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의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이동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지원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붙임)이 있어 자치구와 재정분담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안번호 93)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 ----- -----.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1. --- 양육부담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5.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

가정생활 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의안번호 93)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등	스 지원
<신설>	6.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
<신설>	7. 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 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의안번호 93)

-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93) 제6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sup>17)</sup> 및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조례」를 반영하여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장이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1-3학년)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sup>18)</sup>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관련 정책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지원대상, 예산규모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안번호 93)
<p>제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p> <p>2.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p> <p>3. (생략)</p>	<p>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① ----- -----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p> <p>1. 일·생활 균형 ----- -----</p> <p>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p> <p>3. (현행과 같음)</p>

<sup>18)</sup>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2021-12-31), p.8~10.

현행	개정안 (의안번호 93)
<신설>	4.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설>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종합의견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임신부가 제외되어 민원 및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외국인주민(아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번호 53)과 다문화 가족 구성원(최호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59) 임신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각각 안을 발의하였음.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저출산·양육 관련 사업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은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

에 명시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으로써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양육가정에 이동서비스 및 가사서비스 지원은 기존 자치구  
에서 기시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의가 필요  
해 보임.

문 의 처

김종훈 입법조사관 (02-2180-8148)

# 붙임. 이동서비스 및 가사서비스 지원 관련 자치구 유사사업

## ○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관련 자치구 유사사업

시행기관	은평구	노원구	광진구	강동구	성북구
추진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각 자치구 지원조례				
지원내용	임신부 및 영아의 병원 진료, 관련 시설 이용을 위한 택시 서비스 제공 (대형 택시5~11인승)				
지원대상	임신부,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	임신부,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 난임 부부	임신부,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	임신부,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
운영방법	관내 택시운송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임신부 택시 전용차량 6~8대 운영, 관내 이동만 가능		택시플랫폼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차량 대수 관계없이 운영, 관외 이동 가능		
지원금액	연10회 이용권	연10회 이용권	택시바우처 10만원	6만원 상당 택시 마일리지	택시바우처 10만원
예산('22년)	510,660천원	244,805천원	224,600천원	212,800천원	103,000천원 ('22.7.1 시행)

## ○ 자녀 양육가정의 가사서비스 지원 관련 자치구 유사사업

시행기관	중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마포구
지원대상	임신부 ※ '19년 고위험임신부 → 일반 임신부	임산부 ※ 출산 후 1년까지	임신부	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가정 (만 8세이하 자녀 3명이상)
지원규모	70명	600명	600명	50명
운영방법	-동주민센터, 보건소 접수 -서비스 제공:협약기관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용역기관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민간위탁기관	-마포구 여성가족과 접수 -서비스 제공:협약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행복한돌봄 (성동지부,남부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행복한돌봄
지원횟수	총 5회	총 6회	총 4회	월 4회
예산('22년)	28백만원 (1명당 단가 약 68천원)	237백만원 (1명당 단가 약 56천원)	144백만원 (1명당 단가 약 58천원)	28백만원 (1명당 단가 약 55천원 중 마포구 50천원 부담)